제3040호
2023. 11. 9.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주 재 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	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7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17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4
제173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10
제173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16
제173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
제17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9
제173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8호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중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제1조 ~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제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29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 ·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 · 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 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 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 · 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 ·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 · 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 · 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장비 · 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 · 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 · 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 폭풍 ·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 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 · 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 · 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 · 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제설 · 제빙 범위(제4조 관련)

1. 보도의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전폭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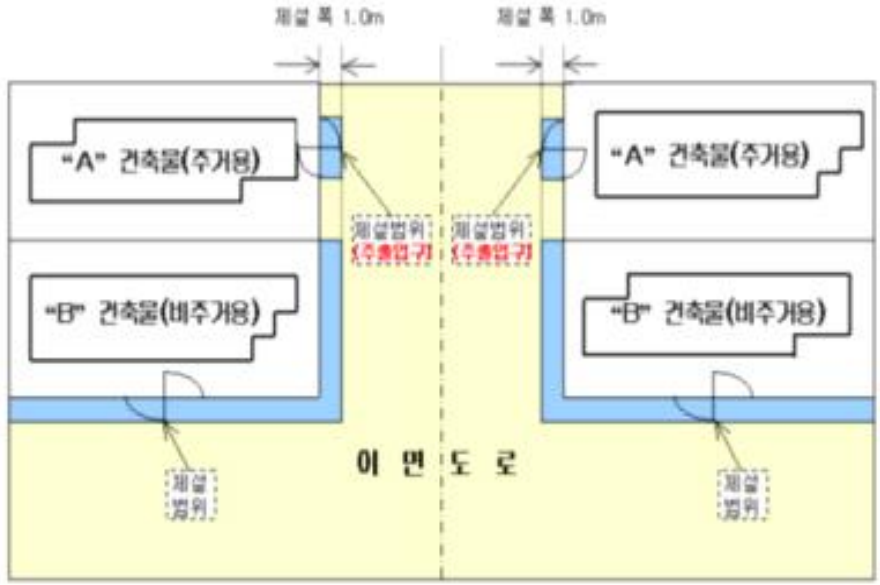

[별표 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 · 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항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cm)		제설 · 제빙 시점 적설량(cm)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서울은 0.5이하 지역에 해당함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 · 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S_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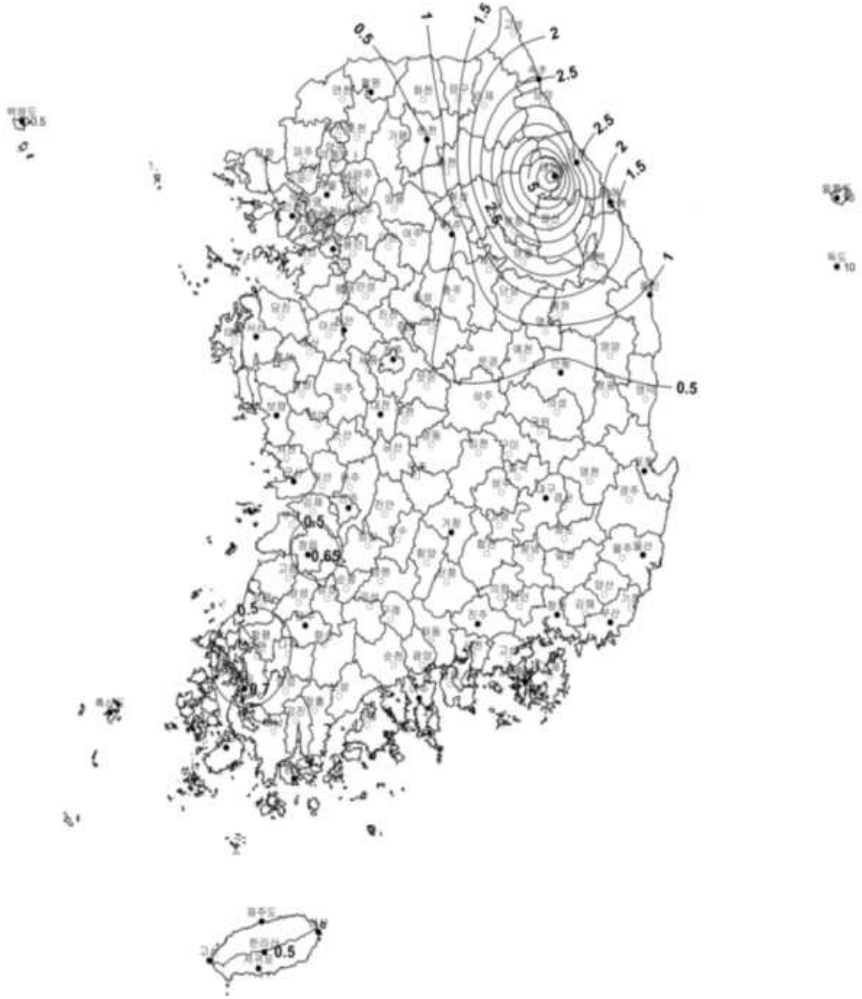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보도, 이면도로, 건축물의 지붕 등) 제설・제빙에 대한 구체적 책임범위 필요

○ 제설・제빙에 대한 구체적 책임범위 선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전 구민 제설작업 참여도를 높여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대책 기여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제1조 ~ 제2조)

○ 제설・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 및 범위, 작업시기(제3조 ~ 제5조)

○ 제설・제빙에 방법과 안전유의 및 중지 등(제6조 ~ 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3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의 예방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제19조에 따른 갈등관리실태의 평가ㆍ활용ㆍ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기획재정 업무 소관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과 분야를 고려하여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반드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조정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마을갈등조정지원단) ① 구청장은 갈등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지원을 위한 상담·의견청취, 사례조사 및 중재 활동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련한 활동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지원단 단원,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8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19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갈등 업무추진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에 따른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제16조에 의한 지원단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우리 구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된 갈등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등 (제1조～제5조)

○ 갈등영향분석 (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 (제7조~제9조)

○ 심의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0조~제11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합의결과문 이행 등 (제12조~제14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비밀유지 (제15조～제17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제18조~제19조)

○ 수당지급 및 갈등관리전문인력 양성 등(제20조~제2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31호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어 대표단을 구성한다.

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을 처음 구성할 때에는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안전보안관 위·해촉대장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위·해촉일자		비고
						위 촉	해 촉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안 제3조~제5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관리 및 해촉(안 제6조~제8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32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함에 있어”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부여 되도록”을 “부여되도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아트센터은”을 “아트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받아야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함에 있어”를 “선정할 때”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각각 “원상복구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할인은「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를 “할인은「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유지관리상”을 “유지ㆍ관리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 중 “그손해”를 “그 손해”로 한다.

제22조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1. 사용료 일반기준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나. 토 · 일 · 공휴일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를 할증할 수 있다.

다.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 이내,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가. 공연장 및 충무갤러리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공 연	1,500,000	1회 3시간	클 래 식	냉 · 난방,음향장비, 조명, 영상장비 등 포함
		리허설	750,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공 연	3,000,000	리허설 및 오후공연 포함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500,000	1회 3시간		
		심야세팅 · 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공 연		6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3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 · 철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공 연		4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 · 철수		400,000	1회 3시간		
충무갤러리			400,000	1일	회화, 조각 등 전시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기준	비고
피아노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 마 하	40,000		
부대시설	컨벤션센터	200,000		
	리허설룸	100,000		
	공연연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다. 비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할 때에는 ----------.
제5조(아트센터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서울특별시 중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아트센터의 개방 및 이용) ----------범위---------- 부여되도록 ----------. ----------.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 ----------공무원√중----------.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 받아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④---------- 범위---------- 연장할 -----.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선정할 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 원상복구하여야 ---.
②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원상복구하여야 ---. ----------.
제12조(사용허가) ①·② (생 략)	제12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여야 한다.	③---------- 각√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시간) 아트센터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3조(사용시간) ---------- 각√호----------.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하는√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생 략)	제15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아니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극장 및 충무갤러리는 사용예정일 60일 전, 이외의 모든 시설은 사용예정일 15일전에 서면으로 대관 계약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반환	2. ---------- 15일√전----------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징수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구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 한도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할인 한도 - 입장료의 30% 이내	1. ---------- 30퍼센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④ --------- 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현 행	개 정 안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되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 ----------.
제18조(입장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입장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2. ---------- 유지·관리상 ----------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수√있다. ----------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있다.	②---------- 수 있다.
제20조(사용자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그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 책임) ---------- 그√손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한 ----------.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1. 사용료 일반기준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가. 공연장 및 공무원리리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종 연	1,250,000	1회 3시간	월 제 시	냉·난방,음향장비,조명, 영상장비 등 포함
		리허설	625,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종 연	2,000,000	리허설 및 소무공연 포함	무기함,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종 연		5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종 연		4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400,000	1회 3시간		
공무원리리			400,000	1일	회의, 교육 등 전시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간	비고
피아노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 마 하	40,000		
부대시설	전별연회장	200,000		
	리허설홀	100,000		
	분연분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가. 공연장 및 공무원리리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종 연	1,500,000	1회 3시간	월 제 시	냉·난방,음향장비,조명, 영상장비 등 포함
		리허설	750,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종 연	3,000,000	리허설 및 소무공연 포함	무기함,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5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종 연		6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3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종 연		400,000	1회 3시간	공 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400,000	1회 3시간		
공무원리리			400,000	1일	회의, 교육 등 전시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충무아트센터 사용료를 장기간 미조정하여 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 비용 및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무아트센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별표).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33호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규정(제3조 ~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등(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34호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로 변경한다.

제4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4조제2항에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5조제4항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을 선발하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학교에 배치·활동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7조의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한다.

제12조의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로 변경한다.

제15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삭 제>
① <신 설>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 설>	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신 설>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전문인력을 선발하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학교에 배치·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 20명 이내의 위원----------.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삭 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민의 책무를 명시함(제4조)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함(제5조)